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8-102호

도시관리계획(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05호(2017.11.16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석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1월 1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 :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

2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○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공공공지	공간시설	시흥동 973-4번지 일대	-	증) 71.6	71.6	-	-

○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구 번호	가구면적(㎡)		획지 번호	획지 면적(㎡)	위치			계획 내용	비고
	기정	변경			위치	면적(㎡)			
						기정	변경		
⑨	10,486	10,227.4주1)	1	10,227.4주1)	시흥동 973-2	3,014.1	3,014.1	자율적 공동 개발	
					시흥동 973-3	412.5	412.5		
					시흥동 973-4	1,572.1	1,572.1		
					시흥동 1001-41	13.7	13.7		
					시흥동 973-6	1,288.5	1,288.5		
					시흥동 964-14주1)	4,164.8	3,906.2		감) 258.6㎡
					시흥동 산14-14	20.3	20.3		

주1) 시흥동 964-14 : 공부상 면적 반영

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、고시에 갈음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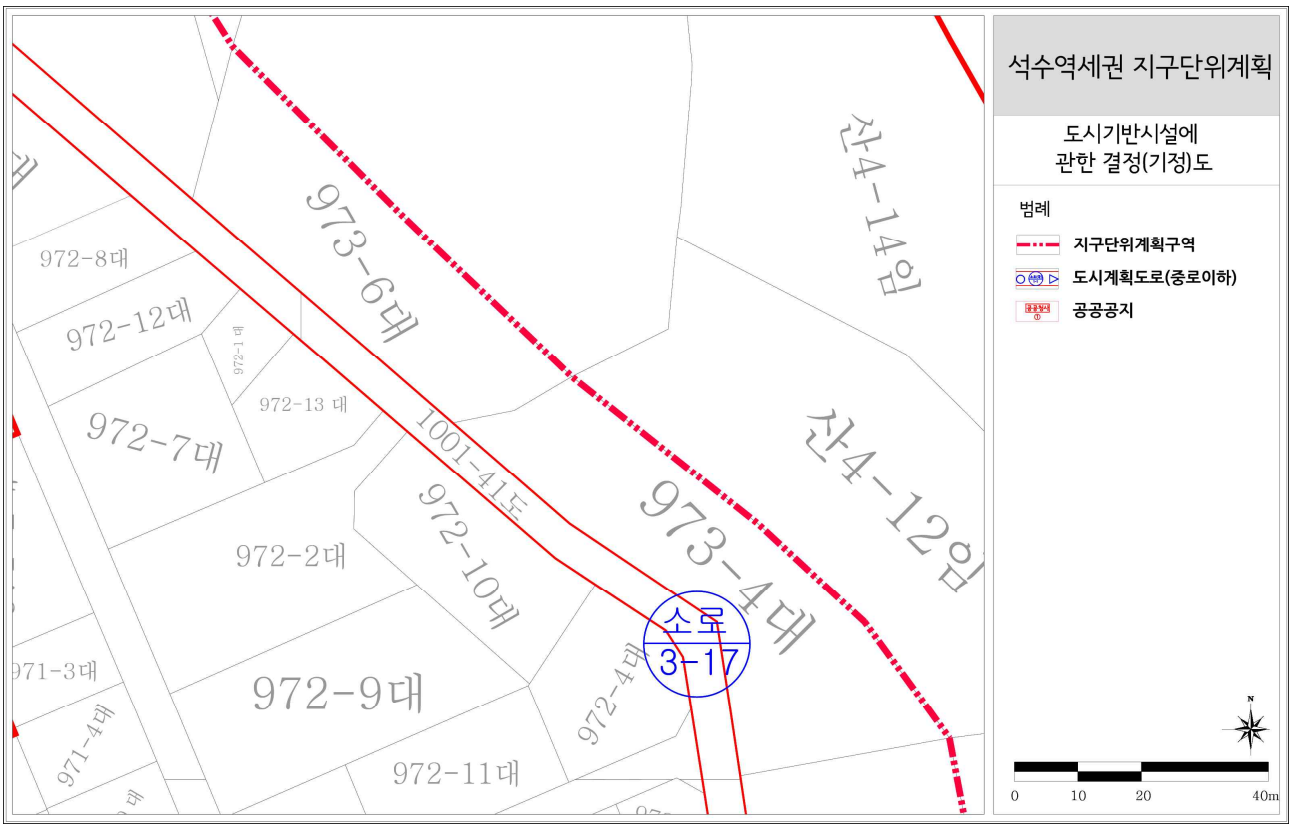
4. 관계도면 :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비치도면과 같음.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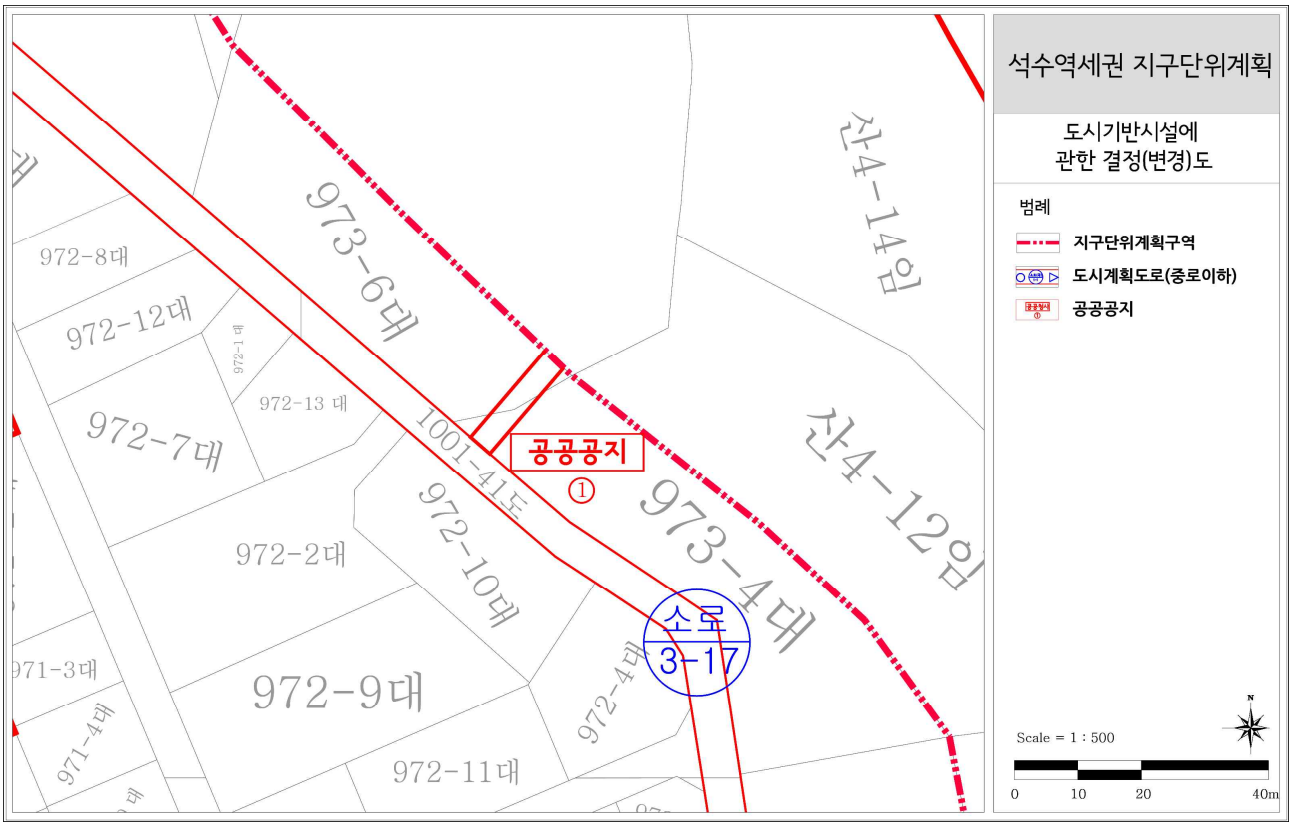
5.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금천구 도시계획과(☎ 02-2627-206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첨부 :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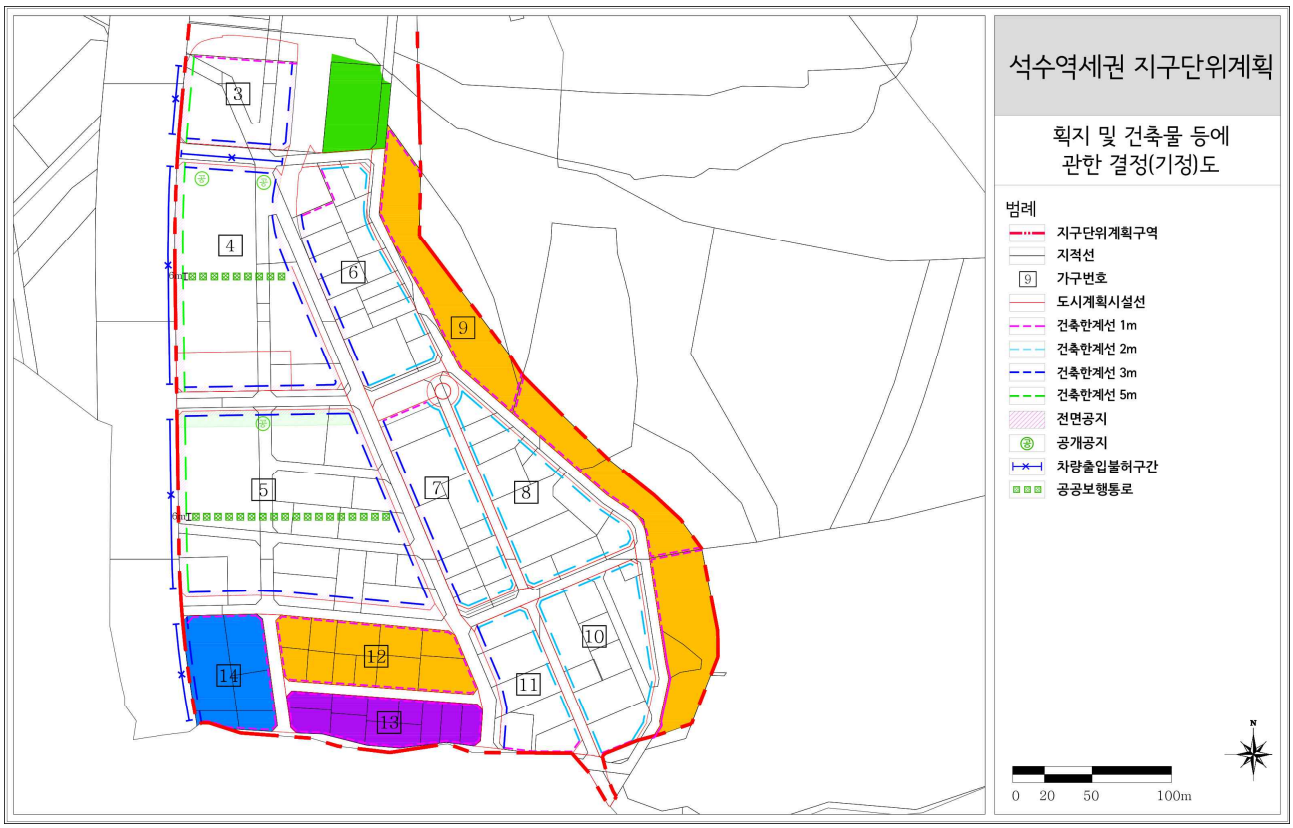
○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○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○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